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39
------------	-----

2022년 9월 22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
나. 제안일자 : 2022년 8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

- 제314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2년 9월 22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실장 백호)

가. 제안이유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(5개) 체계를 단일 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분과 간 연계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,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위원장 대리 출석으로 인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 시설을 시장이 직접 설치 및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5조제3항 신설)
- 시의회 보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(안 제8조)
- 위원회 분과 구분 및 분과위원회 운영 내용 삭제 (제6조 삭제)
-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, 위원 임기연장(안 제3조 및 제4조 개정)
 - 위원 수를 5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,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변경(안 제3조)
 -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(안 제4조)
- 그 밖에 조문의 체계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2. 6. 9. ~ 2022. 6. 29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시민위원회(이하 시민위원회) 5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여 시민위원회로 통합하고, 시민위원회 위원수, 위원 임기, 위원장 직급 등을 조정하여 시민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 삭제 관련(안 제3조 및 제6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3조는 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축소·조정하고,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를 규정하는 한편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며

동 개정조례안 제6조는 버스정책, 노선조정, 시설개선, 경영합리화, 시민혁신 등 총 5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

- 시민위원회는 현재 42명¹⁾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, 각 위원들은 시민위원회 및 1~3개의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

1)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구성현황

최근 5년간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현황을 살펴보면 시민 위원회의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, 각 분과위원회도 버스정책, 노선조정,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를 제외하면 개최 실적이 없는 실정이며, 행정1부시장이 참석하여 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

※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

(단위:회)

구 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 8월	
합 계	4	5	3	4	2	
버스정책 시민위원회	-	-	-	-	-	
분과위원회	버스정책	-	3	2	1	1
	노선조정	2	1	-	2	-
	경영합리화	2	1	1	1	1
	시설개선	-	-	-	-	-
	시민혁신	-	-	-	-	-
행정1부시장 참석횟수	-	-	-	-	-	

이는 시민위원회와 일부 분과위원회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으나 위원수가 너무 많아 위원회 개최시 위원별 일정조정 등 시간과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모되어 안전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만 개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원 수 조정, 분과위원회 폐지 및 통합, 당연직 위원장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

구 분	계	학계/ 전문가	시민	직능대표	시의원	사업자/ 종사자	공무원	
버스정책시민 위원회	계	42	12	9	9	5	5	2
	남	24	10	4	0	4	4	2
	여	18	2	5	9	1	1	0

※ 분과위원회 : 버스정책 16명, 노선조정 14명, 경영합리화 15명, 시설개선 15명, 시민혁신 15명

다만 위원수 규정을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수준의 감축인지에 대한 측면과 노선조정 분과위원회와 같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위원회까지 모두 폐지하고 시민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

- 아울러 동 개정안은 “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4항2)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■ 위원의 임기 관련(안 제4조)

- 동 개정조례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
-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매년 신규위원 위촉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, 교통전문가, 시민단체, 직능대표, 시의원, 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개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위원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2)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위원회의 구성)

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또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3항³⁾에 서 “예외규정을 제외하고 6년을 넘을 수 없도록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인의 장기간 위원선임에 따른 불공정 시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■ 서면심의 개최 관련(안 제7조제2항)

- 동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은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
-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에서 위원회 운영을 간편하게 하고, 행정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, 대면소통을 통한 위원간 의견교류가 차단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어려워져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

3)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(위원회의 구성)

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(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)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(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
2.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
3.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가. 수정이유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수를 일부 조정함

나. 주요골자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함(제3조제1항)
-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장”를 “시장”으로 자구 조정(제2조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9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2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줄이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
-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·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함(제3조제1항)
-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장”를 “시장”으로 자구 조정(제2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서울시장 제출안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<u>서 울 특 별 시 장 (이 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 ----- <u>버스정책</u> <u>시민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, <u>서울특 별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 <u>구성하며,</u> <u>위촉직 위원의 경우</u> <u>특정 성별이 10분의 6</u> <u>을 초과하지 아니하</u> <u>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 <시장 제 출안과 동일></p>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의2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버스정책 시민위원회”를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 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20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1부시장”을 “도시교통실장”으로,

“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년으로 하되”을 “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다만,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 제2항제3호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의2(위원회의 설치)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</u>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실 소속하에 <u>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서울특별시 <u>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행정1부시장</u>으로 하</p>	<p>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의2(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<u>버스정책시민위원</u> <u>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,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 <u>20명</u> ----- <u>구성</u>하 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이 <u>10분의 6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<u>도시교통실장</u>-----</p>

고, 부위원장은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버스정책, 노선조정, 시설 개선, 경영합리화, 시민혁신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버스정책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
나.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

다.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·개선에 관한 사항

라. 이해당사자간 갈등·조정·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

2. 노선조정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

-----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----. 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<삭 제>

사항

나.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

3. 시설개선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향상 관련 사항

나.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경영합리화분과위원회

가.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나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·관리·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5. 시민혁신분과위원회

가. 시민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현장조사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

나.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

②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9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9월 22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“5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내”로 줄이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
-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·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수를 “15명 이내”에서 “20명 이내”로 확대함(제3조제1항)
-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자구 조정(제2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서울시장 제출안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서울특별시 <u>버스정책</u> <u>시민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장</u>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 ----- <u>버스정책</u> <u>시민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, <u>서울특</u> <u>별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, <u>시장</u>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15명</u> ----- ----- <u>구성하며</u>, <u>위촉직</u> <u>위원의</u> <u>경우</u> <u>특정</u> <u>성별이</u> <u>10분의</u> <u>6</u> <u>을</u> <u>초과하지</u> <u>아니하</u> <u>도록</u> <u>하여야</u> <u>한다</u>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 <시장 제 출안과 동일></p>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목제명 “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의2 중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, “버스정책 시민위원회”를 “버스정책시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버스정책 시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를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0명”을 “20명”으로,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행정1부시장”을 “도시교통실장”으로,

“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”를 “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년으로 하되”을 “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다만,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12조 제2항제3호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의2(위원회의 설치) 시내버스정책에 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</u>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실 소속하에 <u>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를 둔다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서울특별시 <u>버스정책 시민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,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<u>행정1부시장</u>으로 하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</u> <u>조례</u></p> <p>제1조의2(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<u>서울특별</u> <u>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<u>버스정책시민위원</u> <u>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원회의 기능) ----- <u>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,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 <u>20명</u> ----- <u>구성</u>하 며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이 <u>10분의 6</u>을 초과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<u>도시교통실장</u>-----</p>

고, 부위원장은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.

③ (생략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버스정책, 노선조정, 시설 개선, 경영합리화, 시민혁신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버스정책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
나.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

다.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조정·개선에 관한 사항

라. 이해당사자간 갈등·조정·중재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

마. 그 밖에 시내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

2. 노선조정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

-----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
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----. 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분과위원회) ① <삭 제>

사항

나. 노선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

3. 시설개선분과위원회

가. 시내버스 차량개선 및 안전성 향상 관련 사항

나.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4. 경영합리화분과위원회

가. 보조금 등의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나.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운영·관리·정산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

5. 시민혁신분과위원회

가. 시민만족도 평가 등 서비스 평가제 및 현장조사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

나. 버스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

② 분과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<삭 제>

